

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

음성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』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사업에 참여하시길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안내문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음성상공회의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
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(지식서비스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)
※ '22년(월80만원×12개월 지급) → '23년(최초 1년은 월60만원×12개월 지급,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)

■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- 지원내용
 -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
(2년간 최대 1,200만원)
- 지원요건
 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- 지원한도
 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100%)까지 지원
(단, 최대 30명)

■ 지원대상

- 기업 요건
 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
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 - 소비향락업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·중대산업재해
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
 - 연 매출액('21년, '22년 중 택일)이 '기업의 기준피보험자 수 x 1,800만원' 이상인 기업(업력 1년 이상 기준)
 -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 참고
- 청년 요건
 - 만15세~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
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
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* 등 지원 가능
* 단 대학졸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
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으로 지원 불가
 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
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또는 대학 재학·휴학·졸업예정자 등은 지원 제외
 -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 참고

■ 참여절차

○ 참여방법

-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(www.work.go.kr/youthjob) **운영기관(음성상공회의소)**를 지정하여 참여 신청
-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**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(참여 신청시 사전 채용 인원 정보 기입)**
-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
 - 1) **사업자등록증**
 - 2) **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법인·개인사업자)** 또는 **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(면세사업자)**
 - 2021년 또는 2022년 중 1개년도(1.1~12.31) 제출
 - 국세청(홈택스)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

○ 지원절차

-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신청(기업 적격 여부 통지 및 **승인 기업과 협약체결**)
- 청년채용(**채용자명단 제출** 및 청년 적격 여부 통지)
- 승인된 청년 고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심사, 지급
(홈페이지를 통해 신청, 최초 6개월분 일시 신청 후 3개월 단위 신청)
-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 참고

■ 문의처

- 음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(043-873-9922)